

산학협력가족회사 운영규정

제정 : 2014.03.01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20.03.01

개정 : 2021.12.01

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가족회사(이하 “가족회사”라 한다) 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산학협력 가족회사”라 함은 본 대학교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. <개정 2020. 03. 01., 2021.12.01.>
2. “산업체”란 본 대학교와 연구, 공동연구, 기술인력 교류, 취업, 교육 등의 유기적인 산학협력관계를 유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, 연구소, 공공 기관 등을 말한다. <개정 2020. 03. 01., 2021.12.01.>

제3조(협력사항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.

1.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 및 경영 자문, 공동연구
2. 인력, 시설, 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
3. 위탁교육프로그램, 계약형 전공교과목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
4. 학생의 기업 인턴십,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
5.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
6. 산학협력 세미나, 특강, 워크숍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7. 학생의 취업, 프로젝트 공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
8. 산업체와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9. 기타 협약 관련 제반 사항

제4조(업무) ① 가족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입학학생취업처 내 가족회사 전담 인력을 두고 가족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②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가족회사의 가입 접수, 승인, 탈퇴 및 정보관리

2. 가족회사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
3. 가족회사 상담 및 지원
4. 기타 가족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
제5조(가입 및 승인) ① 가족회사 가입을 원하는 기업체는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본 대학교 입학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② 입학학생취업처는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하고, 입학학생취업처장의 승인을 얻어 가족회사 가입을 완료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 2023.10.16.>

제6조(협약) 가입이 승인된 기업체는 가족회사(기관) 협약서(별지 제2호 서식)에 의거하여 협약을 체결하되, 협약내용은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. 필요 시 가족회사 증서 및 현판을 수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7조(협약의 해지 등) ① 가족회사가 휴·폐업으로 확인된 경우 자동으로 해지되며 입학 학생취업처장의 확인을 받는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② 가족회사가 더 이상 본 대학교와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산학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3.01.>

제8조(가족회사 권리 및 의무) ① 가족회사는 필요에 따라 가족회사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가족회사는 본 대학교가 제공하는 산학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<개정 2020. 03. 01.>

③ 가족회사는 본 대학교의 가족회사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가진다. <개정2020. 03. 01.>

제9조(비용부담) 업무협력 및 상호 공동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 공동사업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.

제10조(정보보호) 입학학생취업처는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의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 2023.10.16.>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 서식>

관리번호	산학협력 가족기관(회사) 가입신청서				
기관(회사)명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	대표자명			
사업자(법인) 등록번호	* 첨부서류 : ①사업자등록증사본 1부(필수) ②국민연금관리공단 발급한<국민연금사업장관리증명서>(필수) ③인증관련서류 사본				
소재지	본사		전화		
			FAX		
	지사/기타		전화		
			FAX		
직원수(명)		취업약정가능인원		홈페이지	
업종	자동차(), 전기전자(), 정보통신(s/w)(), 토목·건축(), 교육() 보건의료(), 사회복지(), 서비스(), 기타()				
자본금(천원)		매출액(천원)		연구소명(유, 무)	
주요생산품목	1)		2)		
인증현황	*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십시오. 중소기업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자원통상부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월드클래스300 <input type="checkbox"/> 명장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Best HRD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강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혁신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_____				
기관(회사) 실무자	성명		e-mail		
	전화		부서명(직위)		
	휴대전화		Fax번호		
지도희망 교수	_____학과 (_____ 교수)				
※ 대학기재사항					
추천자성명				학과명	
추천사유					
본 기관(회사)는 대원대학교 「산학협력 가족기관(회사)」에 가입하고자 합니다. 2019 . . .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between; width: 100%;"> 기관(기업)명 (직인) </div>					

* 양식 : <http://www.daewon.ac.kr> 공지사항, * 제출 : 043-649-3508(팩스)

* 주소 : 충북 제천시 대학로 316(신월동) ☎ 043-649-3272

<별지 제2호 서식>

산학협력 가족회사 협약서

대원대학교와 _____는 상호 협력 하에 교육, 연구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협약은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으로 산업체와 대학의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사항)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상호 협력한다.

1.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 및 경영 자문, 공동연구
2. 인력, 시설 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(산업체 인사 겸임교수 초빙)
3. 위탁교육프로그램, 계약형 전공교과목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
4. 학생의 기업 인턴십,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
5.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에 관한 사항
6. 산학협력 세미나, 특강, 워크숍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7. 학생의 취업, 프로젝트 공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
8. 산업체와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사항
9. 기타 협약 관련 제반 사항

제3조 (비용부담) 업무협력 및 상호 공동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 공동사업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에 대해서도 이와 같다.

제4조 (비밀유지) 양 기관은 본 협약사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. 다만,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 합의하여 공개한다.

제5조 (상호협력) ① 양 기관은 본 협약목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6조 (협약의 해지) 이 협약은 양 기관 중 일방의 해지통보로 자동 해지된다. 다만, 해지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4일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 (효력발생) 이 약정은 양 기관이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20 년 월 일

대 원 대 학 교

